

인천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772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7722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가단23607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正

담당변호사 김광수

원고보조참가인A

피고, 항소인D

변론 종결 2023. 1. 31.

판결 선고 2023. 2. 1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가단23607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689,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9.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9,37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소송수계 및 참가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가 2018. 1. 18. 인천 미추홀구 Q 소재 F건물 G호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피고에게 34,000,000원을 증여한 행위에 대한 부인 및 그 원상회복과, ② 채무자가 2018.

2.분부터 2019. 12.분까지 22개월분의 급여 합계 109,378,84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한 부인 및 그 원상회복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위 ② 청구만 인용하고 위 ①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위 ② 청구인 109,378,840원 부분에 한정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자는 2017. 9. 1.부터 2019. 12.까지 K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채무자는 위 재직기간 중 2018. 2.분부터 2019. 12.분까지 22개월에 해당하는 급여 109,378,840원을 자신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로써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가액인 109,378,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고의부인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및 법령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으로 될 파산자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부족한 시기에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4, 15호증, 을 제13,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채무자는 2017. 9. 1.부터 2019. 12. 31. 이후까지 K회사에서 근무한 점, ② 위 기간 중 2018. 2.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22개월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급여 합계액 109,378,840원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③ 채무자는 위 송금행위로 인해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단11662사건), ④ 채무자가 위 기간 동안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위와 같은 급여 송금을 통해 피고에게 위 급여 상당의 돈을 증여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부족한 시기에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다만 위 법리 및 법령에 따르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109,378,840원은 채무자의 급여로써, 그중 1/2인 54,689,420원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그에 관한 채무자의 증여는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쟁을 하나,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부인의 소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쟁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만 하였을 뿐 위 돈을 채무자가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채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 14,510,214원은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일부는 채무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 일부를 채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그에 앞선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채무자의 대출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은 54,689,420원에서 위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라) 따라서 위 급여 중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54,689,420원의 증여는 채무자회생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54,689,420원의 증여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689,4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증여받은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고,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참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2020. 10. 9.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4,689,4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10. 9.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에지회

판사김은경

판사권비룡